

부속서 3-나
영역원칙의 예외

1. **상품목록**

가.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에 첨부되고 부록 3-나-1에 기재된 상품에 제 3.14조를 적용한다.

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은 가호에 언급된 목록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다른 쪽 당사국은 이를 신의성실에 따라 고려한다. 그러한 개정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 채택된다.

2. **원산지 부여**

가. 수출을 위하여 재반입 당사국의 영역에서 제3.6조에 규정된 공정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제1항가호에 규정되고 이후 개정된 목록상의 상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1) 비원산지 투입량의 총 가치⁷⁾가 원산지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신청된 최종 상품의 FOB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2) 당사국으로부터 반출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재반입된 재료나 상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재료의 총 가치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나. 이 부속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의 관련 조항은 제 3.14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 부여에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3. **제3.14조의 이행을 위한 특별 절차**

가. 제3.14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증명서는 제4장(원산지 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⁸⁾에 의하여 발급된다.

나.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에 그 상품은 제3.14조가 적용됨을 표시한다.

다. 이 부속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4장(원산지 절차)의 관련 조항은 제3.14조가 적용되는 상품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

7) “비원산지 투입량의 총 가치”란 수송비를 포함한 해당 당사국의 역외에서 추가된 모든 재료 및 누적된 그 밖의 모든 비용은 물론 역내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8)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은 대한민국의 관세당국을 말한다.

된다.

라. 각 당사국은 제4.11조(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검증), 제4.12조(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한 검증), 제4.13조(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검증), 제4.15조(비밀유지) 및 제4.18조(통일규칙)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제3.14조가 적용되는 상품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을 지원한다.

4.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

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제3.14조가 적용되는 상품이 자국의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를 발생시킬 정도의 물량 증가와 그러한 조건 하에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산업에 그러한 피해 또는 피해 야기의 위협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기간 동안 제3.14조의 적용을 자유로이 중지한다.

나. 가호에 따라 제3.14조의 적용을 중지하려는 당사국은 그러한 중지 기간이 시작되기 2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지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안된 중지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다. 가호에 언급된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중지 조치를 취한 당사국이 피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하여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여야 한다.

라. 지연이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야기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가호에 따른 제3.14조 적용의 중지는 다른 쪽 당사국에 2개월 전 사전 통보 없이도 잠정적으로 취하여질 수 있다. 다만, 통지가 그러한 중지가 발효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가호에 언급된 결정을 내리고 나호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된 경우, 그 해당 당사국은 제3.14조의 적용을 다음과 같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 1) 심각한 피해가 있음을 증명할 의무가 없다.
- 2) 사전 협의 의무가 없다.
- 3) 중지 기간 또는 빈도의 제한이 없다. 그리고
- 4) 보상의 의무가 없다.

5. 검토

가. 양 당사국은 제15.2조(공동위원회와 검토)제2항다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3.14조의 이행 및 운영을 검토한다. 이러한 목적상,

1) 수출 당사국은 수입 당사국에 대하여 제1항가호에 규정된 첨부 목록상 기재된 각 상품의 지난 6개월간의 수출 통계를 포함하여 제3.14조의 운영에 대한 간략한 사실 보고서를 수입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2) 수입 당사국은 수출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락하지 아니한 원산지 증명서의 건수 및 거부 사유를 포함한 특혜 관세대우의 신청 거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한다.

나. 수입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는 제3.14조의 이행 및 운영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추가 정보를 수출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다. 가호에 규정된 검토의 결과를 고려하여, 양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6. 철회권

이 협정이 발효된 날부터 5년 후에, 각 당사국은 제3.14조의 적용 결과로 자국의 이해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검토에 기초하고 그 재량에 따라 이 부속서의 적용을 철회할 권리를 가진다.

7. 이 부속서의 해석·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한 어떠한 분쟁도 제14장(분쟁해결)에 규정된 절차 및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8. 이 부속서의 어떠한 것도 제2장(상품무역)의 제2-2절(긴급수입제한조치)를 포함하여 이 협정상의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